

2020년도 제13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7. 13.(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정인,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12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325건(안건번호 제2020-68316호~6993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68316호는 국내 서버에 저장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공한 사안임. 링크를 제공하는 게시물보다 불법복제물 자체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법해석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사안 공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함.

안건번호 제2020-68317호는 민원인 회사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미지를 다른 판매자가 이용한 사안임. 문제가 되는 제품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사진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69931호~69935호는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것으로 시정권고를 부결함{안건번호 제2020-69926호~69930호와 동일}.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318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3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2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5쪽의 저작물명, 출판사명, 7쪽의 밴드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C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출판사명, 밴드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어도비시스템즈',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tvN', 'OCN', '일본 Tokyo MX', '일본 후지TV', '미국 FOX', '미국 HBO', 'TV조선', '넷플릭스', '이십세기폭스', '유니버설픽처스', '소니 픽처스', '월트디즈니컴퍼니', '(주)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주)싸이더스'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32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0-68316호~69935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8316호

2020-6831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C 위원: 전문위원은 해당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검토한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기존 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사이트가 해외 서버에 있는 링크 설정 게시물을 주로 심의해왔음.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원천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이트인 경우 현실적으로 시정권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이 민사 방조 책임을 인정한 후부터는 링크 설정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였던 것임. 그런데 불법복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링크 설정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음.
본 건은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사이트가 국내 서버에 있어 보호원의 행정력이 미치는 사안임. 불법복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사안에서는 링크를 제공하는 게시물에 대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기 보다는 불법복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에 대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시정권고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 또는 전송중단 하더라도 해당 불법복제물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다른 게시물의 링크들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불법복제물 자체를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하는 것이 효과적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3분과위원회는 링크 설정 게시물에 관하여 심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전체위원회에서 회부하기로 결정하

였음.

- C 위원: 링크를 제공하는 게시물보다 불법복제물 자체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부결 의견이나, 전체위원회에 회부된 사안과 유사하므로 본 건 역시 전체위원회 회부하여 재논의할 필요가 있음.
- B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나 이미 전체위원회에 상정한 안건과 내용을 같이하므로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함.
- A 위원: 링크 설정 게시물이 아닌 해당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가능하다면, 링크 설정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함. 다만 이미 유사한 안건이 전체위원회에 회부된바, 사안 공유와 기준 확정을 위해 전체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68316호는 링크 설정 게시물에 대한 사안 공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8317호는 민원인 회사인 '◆◆◆◆◆◆◆◆'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건으로, 민원인 회사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미지를 다른 판매자가 동일 제품 판매를 위해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안임. 민원인 회사는 이미지 촬영 의뢰 견적

서, 상품 상세페이지에 사용된 원본 파일, 회사 명함 등을 제출하였음.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함께 제시하면서)심의 대상 게시물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민원인이 제출한 원본 이미지와 동일함. 만약 본 건 제품 사진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심의 대상 게시물은 2차적저작물이라기보다는 복제(reproduction)에 해당할 것임.

대법원은 햄 제품에 대한 광고용 카탈로그 사진의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진의 저작물이 문제가 된 사건, 이른바 ‘햄 제품 사진’ 사건에서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사진과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투여된 이른바 ‘이미지 사진’으로 나눈 다음 후자에 대해서만 사진저작물성을 긍정하면서, 그 이유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6831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B 위원: 만약 제품을 구입한 이용자가 직접 촬영한 제품 후기 사진

을 무단 이용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을 직접 촬영한 이용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제품 사진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고,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없음.

반면에 제품을 만든 회사가 사진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전달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과 제품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은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 마찬가지로 본 건 제품 사진은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사진저작물성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또 다른 부차적 쟁점이 있음. 민원인 회사는 촬영 의뢰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사진 촬영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본 건 제품 사진이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 직원이 촬영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어야 함. 만약 외부업체가 사진을 찍은 경우라면, 민원인이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저작권까지 양도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함.

원본 사진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민원인 회사가 사진작업을 발주한 것은 사실로 보임. 또한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심의위원회가 본 건 제품 사진의 저작물성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공공기관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사인 간의 분쟁이나 거래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저작권법 외에 다른 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A 위원: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해당 안건을 부결한다면 보호원은 민

원인에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안건은 국민신문고 민원 건이므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민원 페이지에서 답변을 확인하게 됨. 심의위원회의 답변이 아닌 담당 부서의 답변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답변은 시정 권고 제도가 아닌 민·형사상 소 제기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임. 대심제가 아닌 상황에서 일방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이기에 심의위원회는 선불리 시정권고를 가결해서는 안 됨.
- C 위원: 기존 심의위원회는 제품 사진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 해당 안건은 당사자 사이의 사적 분쟁 성격이 강하므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 정도의 사진을 가지고 저작물성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제품 사진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각 분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부결하고 있으나 심의위원별로 부결 사유가 상이함. 예컨대, 저작물성은 인정되지만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사안에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이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금일 심의에서도 만장일치로 부결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나, 부결 사유는 위원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의 부결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람.
- C 위원: 본 건 제품 사진은 제품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 혹은

제품 사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촬영된 사진에 불과하므로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누가 찍어도 비슷한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의 사진으로서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A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본 건 제품 사진에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판례의 입장과 같이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B 위원: 저도 부결 의견임. 본 건 제품 사진의 저작물성이 불명확하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6831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0-69931호~6993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인데,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것임. 안전번호 제2020-69926호~69930호와 동일하므로, 뒷 순번인 안전번호 제2020-69931호~69935호를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

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69931호~6993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건인 안전번호 제2020-69931호~69935호는 시정권고를 부결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69931호~6993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8318호~6993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8339호는 가수 '영탁'이 실연한 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음원은 2018. 10. 21. 발매된 앨범에 수록된 곡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탁 정규, 싱글 앨범 모음' 압축 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게임 '드워프 샵'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0-68449호는 2020. 3. 19. 출시된 게임 '드워프 샵'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4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게임의 개발·배급사는

‘Potion Junkies’고, 정품 판매가는 10,500원임.

(게임 ‘커피 토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68464호는 2020. 1. 30. 출시된 게임 ‘커피 토크’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게임의 개발·배급사는 ‘Toge Productions’이고, 정품 판매가는 13,500원임.

(SW ‘Adobe Illustrator CC 2015~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8559호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Adobe Illustrator CC’ 2020 버전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20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소프트웨어의 2020 버전은 2019. 11.경 공개되었는데, 권리자인 ‘어도비시스템즈’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소프트웨어의 7일 트라이얼 버전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음. 라이선스 이용료 정가는 한 달에 24,000원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자동인증 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인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방송 ‘나는 자연인이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68876호는 방송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를 405회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6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방송 프로그램은 ‘MBN’에서 2012. 8. 22.부터 방영 중이고, 2020. 7. 8. 기준 407회까지 방영되었음. 참고로 405회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집계기준 4.2%이며, 이 방송 프로그램은 2019. 6. 한국갤럽 조사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위를 기록하였음.

(영화 ‘침입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9506호는 2020. 6. 4. 개봉한 영화 ‘침입자’를 네이버 밴드에서 mp4 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이 영화는 2020. 6. 4.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20. 7. 9. 기준으로 극장 상영 중임. 심의대상 밴드인 “□□□□□□□□”는 멤버 수가 37명이고, 해당 영화 외에도 ‘언더워터’ 등 다수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0-68318호~69930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C 위원: 동의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같은 생각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68318호~6993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68316호는 사안 공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전번호 제2020-68317호, 제2020-69931호~6993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20-68318호~69930호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13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3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7. 20.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정인

위원 이성엽